

이사회 구성규칙

1997년 10월 24일 제정
1998년 6월 26일 개정

1999년 7월 22일 개정
2001년 3월 24일 개정
2003년 3월 22일 개정

제 1조 (이사의 자격요건)

1. 모든(상임)이사는 원칙적으로 정관 제8조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제 2조 (절차)

1. 회장은 (상임)이사의 기한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자격의 적부를 판단하고, 적격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수락서를 받아야 한다.
2. 차기 회장은 본 규칙에 따라 임기개시 해당년도 정기총회 전까지 차기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부회장과 집행이사 등의 차기 임원을 선임하여 임기개시 직전 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제 3조 (이사의 권리, 의무)

1. (상임)이사는 본회 정관에 따라 회의에 부의된 사항의 토의, 결의 및 승인의 권리를 갖는다.
2. (상임)이사는 성실한 회의 참석의 의무를 갖는다.
3. (상임)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는 자문, 심의, 심사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고 신속하게 답하여야 한다.

제 4조 (기록의 유지)

1. 회장은 회비납부 및 회의참석, 자문, 심의, 심사 등 회원의 제반 학회활동을 객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록, 유지하고 차기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2. 후임회장은 위 기록을 근거로 (상임)이사의 자격을 심의하여야 한다.

제 5조 (이사선임)

1. 회장은 정관 제7조 4항의 인원규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을 이사로 선임한다.
 - 1-1. 회원가입 만 10년 이상을 경과한, 조경 및 관련학과 재직교수로서 그간의 회원의무와 학회참여에 충실한 회원
 - 1-2. 회원가입 만 10년 이상을 경과하고, 조경관련업무에 종사하며 그간의 회원의무와 학회참여에 충실한 회원

- 1-3. 위 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회원이 없는 조경(관련)학과의 경우, 2인 이상의 해당학과 전체 회원교수가 동의하여 추천한 1인의 학과대표교수
2. 회장은 이사회 구성원의 10%이내에서 다음의 사람을 이사로 위촉할 수 있다.
 - 2-1. 1항에 언급된 이사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나 그간의 회원의무와 최근의 학회참여에 충실하고 회장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원
 - 2-2. 제1조의 원칙적인 이사의 기본자격에는 미달하나 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대한 공헌이 기대되는 회원과 공조협력체계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단체의 주요임원

제 6조 (상임이사)

1. 회장은 이사 중 회원가입 만 15년 이상을 경과하고 학회활동에 적극적인 회원들을 이사회 구성원의 30% 이내로 선임하여 상임이사회를 구성한다.
2. 회장은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30% 이내에서 상임이사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이사를 상임이사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 7조 (집행이사)

1. 집행이사는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.

제 8조 (각종위원회의 종류)

1. 각종 위원회는 본회의 특정한 업무집행을 위한 한시적 위원회(심포지움 위원회, 도서출판 위원회, 작품전시위원회 등)와 특정분야의 연구를 위한 학술연구위원회로 구분한다.
2. 학술연구위원회는 분야별로 연구회를 둘 수 있다.

제 9조 (각종위원회의 구성)

1. 특별위원회는 회장이 특별위원회의 목적을 고려하여 활동기간, 조직구성, 운영방법 등을 집행이사들과 상의하여 설치한다.
2. 분야별 연구회의 구성 등은 별도의 연구회규정을 따른다.

부 칙

1. 이 규칙은 199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